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2.7.4>

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

※ EPR(www.epr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지정신청 내 용	대상품목	제품규격
	제품·포장재 재질(성질·상태)	포장재 무게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(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·포장재만 해당합니다)에 관한 서류 2. 제품·포장재의 생산·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서류 3.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재질·성질·상태 확인)	→	결재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